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49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6.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1,154,5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154,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1, 2의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노진영

별지1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 [] 경남 진주시 D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C []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 이며,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 []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약외의 '수익자' 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E [] 주식회사는 위 C []에게 ① 2013. 10. 21. 금 3,150만원 을 대출기간 60개월, 금리 연 7.9%, 연체이자율 연 24%로 하여 ② 2013. 04. 04. 금 220만원을 대출기간 18개월, 금리 연 28.4%, 연체이자율 연 33% 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 각 대출신청서 참조).

그런데 위 C []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E [](주)는 2016. 5. 20. 소외 F [] 유한회사 에게 위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F [](유)는 2019. 6. 20. 원고에게 위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소49204호), 원고승소판결이 2020. 12. 16.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C는 원고에게 금 70,335,976원 및 그 중 금 24,674,898원에 대하여는 202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금 572,594원에 대하여는 202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개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아버지는 소외 G인데, 위 G은 2022. 3. 24. 사망하였고, 위 C는 위 G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G의 상속인들 및 위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상속등기신청서류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2. 6. 7. 피고 단독 명의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위 C는 분할합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 C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위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위 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위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 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 그런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위 사해행위 이전인 2017. 6. 2. 및 2017. 12. 19. '채권최고액 6,600만원, 근저당권자 H' 인 근저당, 2017. 7. 26. 및 2017. 12. 19. '채권최고액 6,000만원, 근저당권자 H' 인, 2018. 9. 6. '채권최고액 3,600만원, 근저당권자 H' 인, 2019. 6. 14. '채권최고액 1,800만원, 근저당권자 H' 인, 2020. 4. 23. '채권최고액 1,800만원, 근저당권자 H' 인, 각 근저당권이,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2017. 6. 2. '지상권자 H' 인 지상권이 각 설정되었다가,

위 사해행위 이후인 2022. 9. 20. 각 말소되었으며, 소의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8,600만원, 근저당권자 H' 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022. 11. 8.까지의 원리금인 금 70,335,97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된 청 구 원 인1

1. 기 제출한 소장의 기재내용을 원용합니다.

2. 상속지분 등의 특징

가. 피상속인 [G]은 2022. 3. 24. 사망하였는데, 당시 위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 (피고, 수익자)와 자식들인 'C' (채무자), 'J', 'K'이 있었습니다 (갑 제6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채무자 C와 피고는 부자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2/9'입니다.

나. 위 [G]은 2022. 3. 24.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2. 6. 7.'입니다(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2. 6.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부동산 중 2/9 지분은 위 C가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3. 원상회복의 방법 관련

가.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근저당권자 H)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고, 새로운 근저당권(근저당권자 H)이 설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나. 사실심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22. 9. 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 252,000,000원 이고(갑 제9호증 동기부등본 중 4면 매매목록 참조),

[H]의 2023. 1. 31.자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자가 [H]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55,000,000원입니다([H]의 회신서 16면 참조).

따라서 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부동산 가액 197,000,000원(252,000,000원 - 55,000,000원) 중 위 [C]의 상속지분 상당액 43,777,777원($197,000,000 \times \text{상속지분 } 2/9$; 소수점 이하 절사)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다.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70,335,976원과 위 책임재산 43,777,777원 중 원고는 더 적은 금액인 43,777,777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된 청 구 원 인 2

1. 원상회복의 방법 관련

가.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근저당권자 H)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고, 새로운 근저당권(근저당권자 H)이 설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나. 사실심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22. 9. 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 252,000,000원 이고(갑 제9호증 등기부등본 중 4면 매매목록 참조),

H 의 2023. 1. 31.자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자가 H 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56,804,400원입니다(= 55,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0원 + 1,804,400원, H 의 회신서 1면, 3면, 5면, 7면, 9면, 11면 대출거래내역현황 참조).

따라서 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부동산 가액 95,195,600원(252,000,000원 - 156,804,400원) 중 위 C 의 상속지분 상당액 21,154,577원(95,195,600 × 상속지분 2/9 ; 소수점 이하 절사)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C 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다.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70,335,976원과 위 책임재산 21,154,577원 중 원고는 더 적은 금액인 21,154,577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2

부동산 목록

1. 경상남도 진주시 대 162㎡
2. 경상남도 진주시 주건축물제1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민생활시설 50.52㎡ 끝.

